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51
----------	------

2020. 09. 0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12. 전석기 의원
2. 회부일자 : 2020. 8. 2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전석기 의원)

1. 제안이유

-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대상·주기 설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개정 및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

- 건축법 유지관리조항(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정비(안 제23조, 안제50조제1항 및 3항)
-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안 제23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기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50조)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지정감리자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과 관련한 「건축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법」(2019.4.30.제정, 2020.5.1.시행)으로 이관된 건축물 유지·관리 조문을 정비하며,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전석기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주요 개정내용	해당 조문
1. 다중이용건축물 지정감리자 범위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4.21 공포, '20.10.22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의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 대상범위를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	제18조의2 개정
2. 건축물 유지관리 조문 정비	건축법 상 유지관리조항이 신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정('20.5.1 시행)으로 이관되어 삭제, 관련 인용조문 정비	제23조 삭제, 제50조 개정
3.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 규정	건축법('14.5.28.) 상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조항을 건축물 관리법과 연동하여 신설	제23조 전면개정
4. 건축안전특별회계 자원 확대	건축법 개정('21.1.8시행)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으로 기존 '이행강제금'외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과태료' 추가, 비율 위임사항 반영	제50조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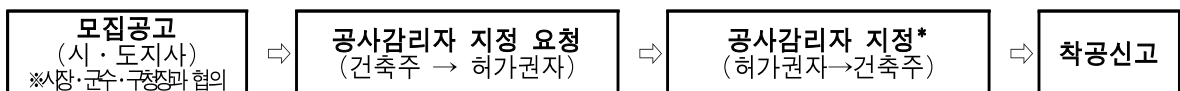
1) 다중이용건축물 지정감리자 범위 확대

-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자’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건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임¹⁾(설계자≠감리자).
 ※ 대상 건축물 등 세부규정은 검토보고서 붙임-2. 참조
-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데²⁾, 금년 4월 2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는 기존 건축사 뿐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³⁾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2020.4.28.공포, 2020.10.22.시행)〉

현행	개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1) 「건축법」 개정안(2017.9.11.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2018.5.5.
- 2) 서울시는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1,760명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음.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서울시 건축조례 제18조의2제9항에 따라 지정업무를 서울시건축사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p>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u>건축사사무소</u>로서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p>	<p>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p>

2)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문 정비

- 그 간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작년 4월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2020.5.1.시행)에서 보다 세부적·체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건축법」의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음.

※ 「건축법」 제23조~제23조의8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26조, 검토보고서 붙임-3. 참조

- 이에 조례에서 해당 사항을 인용했던 조문을 삭제 또는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며,
 - 참고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가칭)」은 주관부서에서 연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현 행	개 정(안)
<p>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p> <p>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법 제35조의2</u>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p> <p>2. ~ 4. (생략)</p> <p>5. <u>법 제81조의2</u>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p> <p>6. ~ 9. (생략)</p> <p>③ 제2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p>	<p><삭 제></p> <p>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u>건축물관리법</u>」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p> <p>2. ~ 4. (생략)</p> <p>5. 「<u>건축물관리법</u>」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p> <p>6. ~ 9. (생략)</p> <p>③ <삭 제></p>

3)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 규정

-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는 「건축법」 제52조의2(2014.5.28. 신설)에서 서울시장 및 구청장이 건축주가 시공한 실내건축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과 주기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그 간 조례로 정하지 않았음³⁾.

< 건축법 >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5. 28. 신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제110조제6호 : 제52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 등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 건축법 시행령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이는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민간인 점, 공공에서 의무점검을 시행할 경우 민간건물 내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른 사생활 침해, 주거보안 등의 문제와, 자치구의 점검 인력 확보 부담 등 현실적 제약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위임 조례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였고, 금년 5월에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

3)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 정비계획’ (2020.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에 따르면 특·광역시 중 조례로 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4곳(서울, 부산, 대구, 울산)임.

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 항목에 실내건축 점검도 포함되었음⁴⁾을 감안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 실내건축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축물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 행	개 정(안)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④ (생략) <u><전면개정></u>	제23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확대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은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외에는 ‘이행강제금’ 밖에 없었으나, 2020.4월 개정된 건축법 상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과태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 상에도 반영함.

4) 점검 주기 -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실시(「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점검 항목 -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제44조, 제47조

- 높이·형태·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 건축설비: 제62조, 제64조 등

※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와 ‘건축물관리법 상 정기점검’의 비교표는 검토보고서 붙임-4. 참조

〈건축법 개정사항(2020.4.7.공포, 2021.1.8.시행)〉

개 정 전	개 정 후 (2020.4.7.공포, 2021.1.8. 시행)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략)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생략)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현행과 같음)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④ -----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 ----- ----- ----- -----

- 참고로 개정된 조문은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되, 제23조 실내건축 관련조항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축사사무소로서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를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본문 중 “건축사로부터”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본문 단서 중 “건축사”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정지 처분”을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본문 중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에”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건축사”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본문 중 “건축사”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업무정

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를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반납한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
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
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
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4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를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로 하고,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p> <p>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 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u>건축사사무소로서 영 제19조의 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u> <p>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u>건축사로부터</u>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u>건축사</u>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p>	<p>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u>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u>에 따른 자로 한다. <p>② ----- -----<u>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u>로부터----- -----<u>공사감리자</u>----- -----</p>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제9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생략)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

-----공사감리자-----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1. (현행과 같음)
2. -----
-----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

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생략)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생략)

⑤ (생략)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에
----- 「건축사법」 과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정지 또는 영업
정지 처분-----

-----.

1. ~ 2. (현행과 같음)
3. -----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4. (현행과 같음)

④ -----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
업자-----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
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3. ~ 6. (생략)

⑥ ~ ⑩ (생략)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 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반납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 4. (생략)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 9. (생략)

③ 제2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

2.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 9. (현행과 같음)

〈삭제〉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
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
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
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
다.

④ -----
----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
율-----

-----.